



2020. 06. 25.(목)
제290회 제천시의회
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[안 건]

| | |
|--|----|
| ○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----- | 1 |
| ○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| 7 |
| ○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| 9 |
| ○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| 11 |
| ○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----- | 13 |
| ○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----- | 19 |
| ○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----- | 26 |

제 천 시 의 회
산업건설위원회

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이정임 의원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이정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동물보호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조례안은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학대 행위 방지하고,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기 동물 등의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 계 법 령

○ 「동물보호법」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수정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 끝.

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826호 관련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0. 06. 19.

발 의 자 : 이정임 의원

1. 수정이유

-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「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」 의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위촉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「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 자격 수정(안 제5조제3항)
- 안 제7조(위원의 위촉) 삭제

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 동물보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**그 밖에**”를 “**변호사 또는**”으로 한다.
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추천한 자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관련 공무원 및 공중보건 전문가

제7조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조 례 안 | 수 정 안 |
|--|--|
|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3. 변호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<신 설></p> <p>4.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</p> |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추천한 자</p> <p>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</p> <p>4. 관련 공무원 및 공중보건 전문가</p> <p>5. 변호사 또는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|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(回避)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안전정책과장 장승호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 개정(2015.12.31.시행)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‘시설물의 지붕’까지로 확대되어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신설 (안 제5조제3호)
- 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 규정 개정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는 등 재해방지 업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 계 법 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」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(지붕 제설·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)」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원 안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안전정책과장 장승호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,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 (안 제6조)
-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 (안 제6조의2 신설)
 -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종류를 규정(제1항)
 - 시행령 제74조제2호가목2)의 경제적 사정으로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자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(제2항)
 -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(제3항)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 현행화 (안 제7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 계 법 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원 안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도시재생과장 윤이순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과 위촉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을 「측량법」에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법령 변경 (안 제1조)
-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조문 정비 (안 제3조, 제9조)
 - 상위법의 위촉직 위원 범위(3명이상) 및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위배 소지 조문 정비
-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및 수당 정비 (안 제4조, 제7조)
 - 위촉직 위원 해임 및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 규정(임기의 남은기간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계 법령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원 안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유통축산과장 이명선)

가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본원칙(안 제3조)
 -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
-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 ~ 제7조)
 - 종합계획의 수립 : 5년마다 수립·시행
 - 먹거리 실태조사 :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위탁 조사 가능
 - 재정지원 : 먹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수정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 끝.

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830호 관련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발의일자 : 2020. 06. 19.

발 의 자 : 산업건설위원회 6명

1. 수정이유

-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의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먹거리 기본권의 대상 명확화(안 제2조제1호)

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**시민에게**”을 “**제천시민의**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모든 사람**”을 “**제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.)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**제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**
을”을 “**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**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**위탁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할**”을 “**맡길**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3호가목 중 “**시의회**”를 “**제천시의회**”로 하고, 같은 호 마
목 중 “**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**”를 “**먹거리 분야 전문가라고**”로
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조 례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시민에게</u>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천시민</u>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먹거리 기본권”이란 <u>모든 사람</u>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, 성별,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제천시민</u> (이하 “<u>시민</u>”이라 한다.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제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</u> 제천시 먹거리 종합계획(이하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5조(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----- ----- <u>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②·③ (생략)

제6조(먹거리 실태조사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·2. (생략)

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~ 라. (생략)

마.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먹거리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맡길 -----
-----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제천시의회-----
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 먹거리 분야 전문가라고 -----

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유통축산과장 이명선)

가. 제안이유

- 학교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공급식 지원(안 제5조~제7조)
 -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·시행 : 매년 수립·시행
 - 공공급식의 지원 :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 지원 원칙
- *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구매비용 지원

- 급식시설지원 등 :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
-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 ~ 제9조)
 -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: 지역농식품 등의 생산,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
 -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: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조례안은 학교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 계 법 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」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수정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끝.

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831호 관련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발의일자 : 2020. 06. 19.

발 의 자 : 산업건설위원회 6명

1. 수정이유

- 제천시장이 제출한 「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중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

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농식품”을 “제천시 지역농식품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사항”을 “중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, 그 밖의 세부사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3호가목 중 “협의회”를 “제천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”를 “분야 전문가라고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조 례 안 | 수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<u>지역농식품</u>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천시 지역농식품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9조(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 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<u>사항</u>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| <p>제9조(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중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, 그 밖의 세부사항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·2. (생략) 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</p> | <p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.</p> |

| | |
|--|--|
| <p>가. <u>시의회</u>가 추천하는 시의원</p> <p>나. ~ 라. (생략)</p> <p>마.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<u>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| <p>가. <u>제천시의회</u>-----</p> <p>-</p> <p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</p> <p><u>분야 전문가라고</u> -----</p> <p>-----</p> |
|--|--|

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06. 10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20. 06. 11.
- 상 정 일 : 2020. 06. 19.(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- 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, 기술지원과장 조승현, 교통과장 이현우, 도시재생과장 윤이순)

가. 심의안건

-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[취득재산]

(단위: m², 천원)

| 구분 | 취 득 면 적 | | | | | 기준가격 (추정가격) | 취득사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토지 | | 건물(시설물) | | 공작물 수량(식) | | |
| | 필지 | 면적 | 동 | 면적 | | | |
| 계 | 25 | 11,202 | 16 | 30,094.91 | | 33,946,960 | |
| 한방바이오과 | | | 1 | 14,000 | | 21,950,000 |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 |
| 교 통 과 | | | 1 | 14,700 | | 11,083,800 |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 |
| 도시재생과 | 16 | 2,148 | 7 | 482.44 | | 578,739 | 남현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추진 |
| 기술지원과 | 9 | 9,054 | 7 | 912.47 | | 334,421 |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|

| 구분 | 처분면적 | | | | | 기준가격 (추정가격) | 처분사유 |
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토지 | | 건물(시설물) | | 공작물 수량(식) | | |
| | 필지 | 면적 | 동 | 면적 | | | |
| 계 | | | 8 | 3,216.44 | | 1,120,390 | |
| 교통과 | | | 1 | 2,734 | | 935,730 |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 |
| 도시재생과 | | | 7 | 482.44 | | 184,660 | 남현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추진 |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만)

-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건은 천연물 관련 기업을 위한 임대형 집단 생산시설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천연물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건은 제천시 귀농 희망자 및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수료생에게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·처분 건은 원도심 일원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남현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(새뜰마을사업)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·처분 건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생활 인

프라 개선을 통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관 계 법 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- 2020년 제6회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필

5. 주요 질의 및 답변 “ 생 략 ”

6. 소 수 의 견 “ 없 음 ”

7. 토 론 요 지 “ 없 음 ”

8. 심 사 결 과 “ 원 안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. 끝.